
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요령

2011년

방송통신위원회

I. 재허가 계획

1. 개요 및 대상 사업자

-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1년도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

2. 재허가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
- 접수처 : 우)110-777,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11층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
(☎ 02 - 750 - 2454)

3. 재허가 기준 및 허가증 교부

- 심사결과, 3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'재허가'를 의결하고, 30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허가를 '거부'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'조건부 재허가' 의결
- 30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,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%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- 재허가 심사 종료 후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게는 허가증을 교부하고, 재허가 거부 대상 사업자에게는 청문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

4. 유의사항

- 재허가과 관련된 각종 신청(제출)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
- 과실 및 고의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,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그 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
-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

II. 재허가 심사 내용

1. 심사 방향

-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조건 이행 여부, 향후 사업계획 평가

2. 심사 절차

가. 신청서류 접수

-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

나. 재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처리

- 시청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
 -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
 - 방송통신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
- 신청서류 보완
 -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 서류 징구 및 보완사항 통보
- 결격사유 조회
 -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에 대한 방송법제13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
- 현장실사
 -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, 현장실사 실시

다. 재허가 심사

- 방송사업 심사

-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

○ 방송국 기술심사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)

- 기술기준 등 적합 여부 심사

라. 방송통신위원회 결정

- 심사위원회의 방송사업 심사 결과와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

마.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

- 허가증 교부 또는 재허가 거부 통보, 심사결과 공표

3.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

심사항목	평가지표	배점	비고
1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공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	비계량	100	
2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(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등)	비계량	200	
3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비계량	50	
4.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	비계량	50	
5. 기술적 능력	비계량	50	
6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	비계량	50	
6.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 사례	계량	감점	
합계		500	

※ 감점처리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

Ⅲ.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

1.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부수

○ 재허가 신청서류

- ① 신청공문
-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
- ③ 중계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
- ④ 서약서
- ⑤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증 사본
- ⑥ 중계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보충자료
- ⑦ 중계유선방송사업 사업계획서

2. 작성요령 일반사항

-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,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
- 신청서류는 신청법인 및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. 다만, 기술·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
 -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경우, 신청서류 표지 다음 장에 자문을 받은 분야와 기관을 명시함
-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,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
- 제출서류는 한글문서로 작성하고 A4용지를 사용하며,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야 함
- 운영실적서 및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, 지도·도면 등 불가피하게 A4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

IV.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

1.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

○ 재허가 신청서는 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

가. 허가내용

- ⑫ 기타 허가의 주요내용 : 허가증 상의 부관사항 및 허가증 교부 시 부여된 조건을 상세히 적시

나.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

- 1)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: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기재
- 2)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: “별첨”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7-3 관련법령 준수여부에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

다.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

- 1) 사업수지견적 : “별첨”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1-2 사업수지견적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
- 2) 역무제공내용 : “별첨”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2. 역무제공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
- 3) 수신자 불만처리 : “별첨”으로 표기 후 사업운영실적서 8. 시청자 불만처리 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

라. 방송시설 배치 및 개요

-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

2. 중계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

○ 작성 기본지침

- ② 전화번호 :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, 괄호()속에 휴대폰 번호를 병기
- ⑤ 사업종류 : “중계유선방송사업”으로만 기재
- ⑦ 허가일자 : 신청일 현재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허가증 발급일자를 기재
- ⑨ 송신내용 : “법령에 의한 중계방송”으로 기재
- ⑭ 전송선로 미설치지역 : 전송선로 미설치 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명을 읍·면·동 단위로 표기하고 관련 세부내용을 사업운영실적서 5-3. 전송선로 미설치 지역 및 미설치 사유 부분에 기재
- ⑮ 송신시간, ☎ 주요송신내용, ☎ 자체제작·송신 : 공지채널의 1주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작성

ㄱ 지역내 다른 유선방송과의 관계

- 1) 지역내 타 종합유선방송이 없을 경우 :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기재
- 2) 지역내 타 종합유선방송이 있을 경우 : “별첨”으로 표기하고, 관련 세부내용을 운영실적서 6. 종합유선방송 통합 부분에 기재

3. 서약서

-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의거 작성

4. 허가증

- 신청일 현재 최근 발급 허가증 사본 1매

5. 중계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보충 자료

5-1. 일반현황

가. 법인(사업) 개요

- 소재지, 방송구역, 법인(사업)설립일, 자본금/주식발행수를 양식에 따라 기재
 - ※ 주식 발행이 없는 경우 설립 자본금만 기재
- 대표자, 임원, 편성책임자, 광고책임자 각각의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(가족관계증명서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만 제출)

나. 사업수지전적

구 분		2008년	2009년	2010년
요약 대차대조표	자산총계			
	유동자산			
	고정자산			
	부채총계			
	유동부채			
	고정부채			
	자본총계			
	자본금			
	자본잉여금			
	이익잉여금			
자본조정				
요약 손익계산서	매출액			
	방송사업매출액			
	기타사업매출액			
	매출원가			
	매출총이익			
	판매비와관리비			
	인건비			
	영업이익			
	당기순이익			

○ 각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, 요약 손익계산서 작성(가입자 현황 및 경영실적 작성과 동일한 기준)

○ 사업수지견적은 '종합유선방송사업자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지침'을 참고하여 작성

-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총액으로 작성하고, 인건비는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밑에 별도로 표기

※ 인건비의 범위

- 손익계산서, 매출원가명세서, 제작비명세서 등에 기록된 인건비 계정 과목상의 금액(임금, 임원급여, 상여금, 성과급 등)
- 퇴직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퇴직급여계정상의 금액
-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된 4대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
- 세금과공과금 등에 포함된 4대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
- 비과세급여, 차량유지비, 식대보조, 특별성과급 등의 복리후생비계정의 금액

※ 각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자료 별도제출

다. 주주 현황 및 변동내역

○ 주주현황

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1)	대표 자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	유형 2)	주요 업종 3)	특수 관계 여부	출자비중		구성주주의 최대주주					비고	
						출 자 액	지 분 율	법인명 또는 성명	대 표 자	유형 2)	주요 업종 3)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		
총 계							100%							

※ 해당사항 없을 경우 '해당 없음'으로 표기

①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: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,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

- ② 유형 :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, 정부투자기관(정부소유 비율 %),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(정부투자기관 출자비율 %), 정부출자기관(정부소유 비율 %), 외국법인, 비영리법인,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,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
- ③ 주요업종 :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(KSIC)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(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)을 기입하고,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
- ④ 특수관계여부 : 구성주주간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 표시
- ⑤ 비고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
 - 주주변동내역

순 번	변경일자	변경전			변경후			변경사유	비고
		주주명	출자금액	지분율	주주명	출자금액	지분율		

5-2. 역무제공 부문

가. 방송구역 현황

- 방송구역 세대수 : 해당 구역 내 총 세대수
- 가입가구 수 : 방송구역 내 중계유선 가입가구 수

나. 방송구역 중 서비스 불가능 지역 및 세대수

- 서비스 불가능 지역 : 중계유선방송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

다. 채널구성 현황

- 연도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011년의 경우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
- 공지채널 운영실적 : 각 연도별 방송횟수를 작성

5-3. 사업운영 수지

가. 방송상품과 인터넷상품 결합내역

- 결합내역 : 인터넷 상품을 함께 서비스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

- 각종 투자부문
 - 구내시설 : 사옥신축·구입, 스튜디오 개축 등 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내역 중 전송망, 방송장비 등을 제외한 내용
 - 전송망 유지보수와 신규설치/업그레이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합계를 전송망란에 기입
 - 방송장비 : 헤드엔드시설, 비디오 등 유형자산으로 포함되는 내용

-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현황
 - ※ 각종 투자부문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투자내역만을 별도로 작성.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현황은 모두 각종 투자부문에 포함되어야 함

5-4. 인력운영 현황

- 연도별 직원 현황 작성

5-5. 가입자 및 전송망 부문

- 지역·가구수(세대수) : 행정안전부 발행 주민등록 인구현황 최신판을 이용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작성

- 주택수 : 통계청 발행 주택인구총조사 최신판을 이용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작성

5-6. 종합유선방송(SO) 통합 운영

가. 협업 현황

- 신청일 현재 구역내 협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
 - 협업형태 : 지역내 SO와 100% 협업의 경우 '전지역' 또는 '일부' 로 명시
 - ※ 일부구간 협업시 협업지역을 작성
 - 과금 주체 및 방법 : 시청료(요금) 발행하는 주체 및 고지 방법
 - ※ 협업계약 또는 전송망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
 - 수신료 배분 비율에 대하여 작성

- 서비스 제공 현황 : 일부 협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지역, 공급채널 수, 프로그램 송출 방법 등을 기재

5-7. 공공성·공익성 부문

- ### 가. 허가기간 동안 받은 각종 수상실적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기재
- 대통령, 국무총리, 중앙부처 장관, 광역지방자치단체장(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)으로부터 받은 표창장
 - 차관급 기관장(국세청장, 경찰청장 등)으로부터 받은 표창장
 - 기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
 - 기타 단체로부터 받은 표창장 또는 감사패, 공로패
-
- 허가기간 동안 각종 지역사회발전 기여 현황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 작성
 - 각종 지원금·현물지원(현물지원의 경우 시가 상당으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기재)
-
- ### 나. 관련법령 준수 여부

○ 재허가일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방송법 및 기타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의 순서대로 기입

- 방송법 위반사항 중 과태료, 과징금, 시정명령 처분
-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위반사항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, 경고, 주의 처분
- 기타 방송관련 법령(예 :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등) 위반 처분
- 기타 법령(예 :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, 조세관련 법령 : 세금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경우 내용 및 조치내용 등) 위반 처분

※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첨부

5-8. 시청자 A/S 및 요구사항 처리

가. 방송 수신 A/S처리 실적(횟수)

나. 시청자 요구 상세 내역

○ 지역 주민들의 방송 시청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

6. 중계유선방송사업 계획서

6-1.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 등 실현계획

가. 중계유선방송 운영 이념(목적)

나.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계획

-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널 운영, 지역사회에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통해 어떻게 기여 할 것인지 등을 기술

6-2. 중계유선방송의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

- 해당 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,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정도 등의 내용을 작성

6-3.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

가. 자본금 : 향후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작성

나. 요약 추정 재무제표

※ 작성 대상

- 3-3-가 (사업수지견적) : 법인사업자 또는 가입자 1,500가구 이상 사업자
- 3-3-나 (사업수지견적) : 가입자 1,500가구 이하 사업자

-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요약 대차대조표, 요약 손익계산서를 추정하여 작성
- 사업운영 실적서의 사업수지 견적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

6-4. 시설투자 계획

가.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

- 디지털 전송장치 구축, 전송망 설치/업그레이드, 시범서비스 실시, 본 서비스 실시 시기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

6-5. 가입자 및 전송망 확대 계획

- 향후 연도별로 예상되는 가입 가구수를 작성

※ 운영실적서의 해당부분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

6-6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

가. 구역내 종합유선방송(SO)과의 협업(통합) 계획

- 향후 구역 내 종합유선방송과의 협업 또는 통합 계획에 대하여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- 전지역 또는 일부 지역의 협업 시 서비스 계획 작성

7. 채널 구성 및 운영 계획

- 향후 채널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작성

8. 기타 재허가와 관련된 특이 사항

※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하여 제도적 건의사항 등 기술

9. 시설설치 현황 및 계획

- 현재 구축된 시설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작성